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63호
2. 제 안 자 : 김혜련 의원(찬성자 11명)
3. 제안일자 : 2021년 02월 05일
4.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2. 제안이유

-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할인 구매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되고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결제정보를 제출할 의무화가 필요하고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갖고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등의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제3항).
- 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2019.12.31.)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대행사로 하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임.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할인율 확대, 캐시백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결과, 상품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초 2천억원 발행 계획에서 5차례의 추가 발행을 통해 5,510억원을 판매하였음.

< 2020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

(단위: 백만원)

2020 발행규모	당초예산 (1.10~5.19.)			2회 추경 (5.20~7.12)	3회 추경 (7.13~7.27)	4회 추경 (9.16~12.31)	
	당초 발행규모	1차 추가발행	2차 추가발행	3차 추가발행	4차 추가발행	5차 추가발행	
551,000	179,000	13,000	8,000	39,500	179,000	125,000	7,500

- 올해에는 8,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상반기 발행액 3,900억원 중 현재 24개 자치구¹⁾에서 3,749억원이 판매되었음.

< 2021년도 서울사랑상품권 예산 및 발행규모 >

(기준: 2021. 4. 20. 단위: 백만원)

구 분	연간 발행규모	상반기 발행액	판매액
상품권 발행규모	810,000	390,000	374,939

다. 가맹점·사용자의 결제정보 등 제출(안 제8조제3항)

- 개정안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1) 25개 자치구 중 중구는 4월 말 40억원 발행할 예정

현 행	개정안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u>회수량</u>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u>회수량</u> 등과 <u>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u>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는 빅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상권분석과 고객관계관리(CRM)²⁾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음.
- 현재 상품권 사용자는 비플제로페이 등 16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사전동의 후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 또는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³⁾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사용자의 상품권 구입과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 사용자의

2)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분석·통합해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용을 계획·지원·평가하는 관리체계를 말함.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별 할인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품권의 사용(판매와 환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제19조)

상품권 구매·결제정보는 통계자료 활용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할 것임.

라.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운영대행사 운영과 지도·감독 등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안 제13조는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위원장(상품권 업무의 소관 실·국장)의 직무를, 안 제15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
 - 안 제16조는 위원회 운영, 안 제1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8조는 위원수당 등 위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화폐 전문가와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상품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참고자료]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단위: 개소 /금융결제원 가맹점관리시스템)

기준일자	월별 가맹점	누적 가맹점
'18.12월말	14,677	14,677
'19. 1월말	25,424	40,101
'19. 2월말	14,929	55,030
'19. 3월말	43,331	98,361
'19. 4월말	50,826	149,187
'19. 5월말	4,586	153,773
'19. 6월말	2,931	156,704
'19. 7월말	2,171	158,875
'19. 8월말	2,730	161,605
'19. 9월말	2,331	163,936
'19.10월말	2,340	166,276
'19.11월말	2,593	168,869
'19.12월말	2,035	170,904
'20. 1월말	4,736	175,640
'20. 2월말	2,478	178,118
'20. 3월말	13,154	191,272
'20. 4월말	29,565	220,837
'20. 5월말	22,625	243,462
'20. 6월말	5,848	249,310
'20. 7월말	7,844	257,154
'20. 8월말	3,759	260,913
'20. 9월말	3,873	264,786
'20.10월말	4,392	269,178
'20.11월말	6,555	275,733
'20.12월말	6,259	281,992
'21. 1월말	7,488	289,480
'21. 2월말	3,804	293,284
'21. 3월말	4,827	298,111